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42
----------	-------

발의연월일 : 2025. 9. 19.

발 의 자 : 김한규 · 박민규 · 문정복
박주민 · 이재정 · 양부남
진선미 · 조계원 · 김태년
장철민 · 전진숙 · 한창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도록 하되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무 관행상 시·군·구 단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업체에 유리한 심사기준 운영 등에 따라 사실상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은 안정적 운영 및 공정한 경쟁 등을 위하여 시·도 단위 미만으로는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의 원활한 시장 진

입 및 공정 경쟁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7항 단서).

법률 제 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7항 단서 중 “시·군·구 단위”를 “시·도 단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신청·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 25조에 따른 허가·신청·신고는 이 법에 따른 허가·신청·신고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 ⑥ (생략)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u>시·군·구 단위</u>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 ----- ----- ----- ----- -----. ----- ----- ----- ----- <u>시·도 단위</u> ----- -----.
⑧ ~ ⑱ (생략)	⑧ ~ ⑱ (현행과 같음)